#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44 발의연월일: 2020. 12. 22.

발 의 자:전용기·이상헌·임오경

김홍걸 · 양향자 · 박영순

윤재갑・최혜영・박 정

임호선 · 장경태 · 전혜숙

김종민 · 한준호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을 임대료로 들었음.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정부는 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마련한 바 있음.

현행법상 세액공제 혜택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엔 부족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50"을 "7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①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	
렁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u>2020년 6월 30일</u> 까지	<u>2021년 12월 31일</u>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	
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u>50</u> 에	<u>70</u>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